

남원시공고 제2012-951호

남원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률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5일

남 원 시 장

남원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 운용조례 폐지

1. 폐지이유

- 1995년 본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특별회계 설치 운용실적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남원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조례」 폐지

3. 의견 제출

- 가. 이 폐지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90-701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경제과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또는 구술(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전화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 경제과 기업지원담당(063-620-65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조례 제 호

남원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

폐지조례안

남원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조례

(제정) 1995.01.12 조례 제 9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에 따른 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운용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자대상) 이 자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부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무연탄 채굴업종을 포함한다)으로서 광업을 제외한 제조업
3. 시 또는 도가 장려하는 특수작물의 집단적 재배를 위한 사업이나 지방특혜사업
4. 기타 지역개발 및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대상자의 선정) 용자대상자의 선정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자금의 대부) ①이 자금의 대부는 운영자금에 한한다. 다만, 농업기업화자금의 대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이 자금은 사업체당 500만원의 한도로 대부할 수 있다.

③이 자금의 대부금리는 연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농업기업화 자금은 연 8퍼센트로 한다.

제5조(자금의 상환) ①이 자금의 대부기간은 1년 6월 이내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1차 갱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할 때에는 그 상환금에 대하여 일반 시중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에 따라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제6조(용자배제) 이 자금의 대부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사업자라 할지라도 이 조례에 따른 자금의 대부 현재일에 중소기업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 및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부받고 있지 아니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자금대부신청) ①이 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와 차용증서(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 및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은 대부금액의 같은액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가진 주민 3인 이상의 연대

보증인을 세워야 하고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은 이사 또는 임원(이사 해당인) 전원이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인적담보 이외에 상당한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감독) 시장은 자금을 대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의 관리사항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금의 반환) 이 자금을 대부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시장은 상환기일전이라도 대부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사업운영이 현저히 불건실하여 자금의 상황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권한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전담직원) 시장은 이 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하여 자금관리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공고 제2012-952호

남원시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률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5일

남 원 시 장

남원시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

1. 폐지이유

- 1995년 본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특별회계 설치 운용실적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본 조례의 유지 필요성이 적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남원시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

3. 의견 제출

- 가. 이 폐지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경제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90-701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경제과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또는 구술(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전화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 경제과 기업지원담당(063-620-65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조례 제 호

남원시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폐지조례안

남원시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 1995.01.12 조례 제 9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남원시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상환원금과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중소기업 융자금 및 기타 자금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운영의 위탁) ①이 회계는 운영자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제5조(지방채 발행 등) ①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공고 제2012-953호

남원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률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5일

남 원 시 장

남원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 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

1. 폐지이유

- 1995년 본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특별회계 설치 운용실적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유지 필요성이 적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남원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

3. 의견 제출

- 가. 이 폐지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90-701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경제과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또는 구술(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전화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 경제과 기업지원담당(063-620-65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조례 제 호

**남원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 1995.01.12 조례 제 94호

제1조(목적)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을 비롯하여 농림·수산업의 기업화 또는 협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책정하고 이를 합리적이고 기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2조(관리) 이 특별회계는 경제과장이 관리한다.<개정 2006.12.28, 2007.12.28>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수금 상환금과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융자금, 원금, 상환금, 예수금, 이자 기타 자금운용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손실금의 총당) ①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으로 이를 총당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총당한다.

제6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은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제7조(일시차입금) ①이 특별회계에 있어서 지급할 현금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당해년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8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경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0조(재원조치) ①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융자금은 이 특별회계에 예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각 회계의 적립금 및 금고 여유금을 이 특별회계에 예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예탁금리에 관하여는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